

천상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명	(인)	등급	등급
			인정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소일시	
	주소			
	기타	☐ 일반 ☐ 40%경감 ☐ 60%경감 ☐ 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성남 천상의집 2관	시설종류	시설 급여
	대표자 성명	김은영 (인)	연락처	031-703-4992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3 오성프라자 3층, 4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명		관계	갑의 ()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현금영수증			

제1조(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갑’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2026년 월 일 시 분부터 202 년 월 일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을’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유 효기간으로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의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 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6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하며,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기타(생계비)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 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등 급	요양급여 (1일당)	비급여		월 평균 이용료(31일 기준)			
		식재료비	간식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자
1등급	93,070	10,500	2,000	964,534	733,720	618,314	시설생계비
2등급	86,340	10,500	2,000	922,808	708,685	601,623	
3,4,5등급	81,540	10,500	2,000	893,048	690,829	589,719	

※ 상세 입소비용은 별첨 참조

- ⑤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제외한 비급여비용(상급병실료, 병원이송료, 의료용품비, 프로그램 이용료, 촉탁의 진료비, 약제비 등)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4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⑥ 외래, 입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이나 본 원 외의 장소로 외출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본 원 외의 장소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갑’ 또는 ‘병’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③ ‘병’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이용료 등 수납)

- 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②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279601-04-178948 예금주 : 성남천상의집2관

제6조(계약해지 요건 및 환불)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을’의 해지
 1. ‘을’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③ ‘갑’이 계약을 종료했을 때 ‘을’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전 항의 환불금에서 공제하며, 환불금이 없거나 그 채무액에 부족할 경우 ‘병’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병’을 포함한 ‘갑’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조(퇴소)

- ① ‘을’은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 또는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의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보관의뢰 및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을’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 또는 ‘병’에게 통보한 후 ‘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퇴소당일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7일 이내로 지급한다

제8조(입소물품)

- ① ‘갑’은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 ② ‘을’과 협의되지 않은 물품 및 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갑’의 반입물품 중 보관의뢰 및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오전 09:30부터 11:00와 13:30부터 17:00까지로 한다.(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나 20시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최소 3일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 또는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외박은 외박 당일을 포함하여 1회 최대 10일, 월 15일까지만 시행가능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가의 100%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을’은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⑥ 외박 기간은 일일 수가의 50%를 지불한다.

제10조(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계약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시설물 배상 및 보상의 의무)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입소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법적인 책임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제13조(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병원,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5조(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 등의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공동 간병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입소 계약서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명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을) 성남천상의집2관 김 은 영 (인)



(갑)

(인)

(병)

(인)

< 별 첨 >

구 분		1등급	2등급	3, 4, 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93,070	86,340	81,540
비 급 여	식재료비(1식)	3,500원		
	간식비	2,0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및 촉탁의 진료비용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촉탁의	
			초진비용	재진비용
일반	20%	15%	3,770원	2,670원
기초수급권자	0%	0%	0원	0원
기타 의료수급권자	12%	7.5%	2,260원	1,600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1,510원	1,07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 일반(20%)

구 분	공단 부담금	개인부담금			총계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식재료비/간식비	소계	
1등급	2,233,680	558,420	375,000	933,420	3,167,100
2등급	2,072,160	518,040	375,000	893,040	2,965,200
3등급 이하	1,956,960	489,240	375,000	864,240	2,821,200

▶ 경감(12%)

구 분	공단 부담금	개인부담금(12%)			총계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비급여	소계	
1등급	2,457,048	335,052	375,000	710,052	3,167,100
2등급	2,279,376	310,824	375,000	685,824	2,965,200
3등급 이하	2,152,656	293,544	375,000	668,544	2,821,200

▶ 경감(8%)

구 분	공단 부담금	개인부담금(8%)			총계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비급여	소계	
1등급	2,568,732	223,368	375,000	598,368	3,167,100
2등급	2,382,984	207,216	375,000	582,216	2,965,200
3등급 이하	2,250,504	195,696	375,000	570,696	2,821,200

▶ 기초생활수급자(0%)

구 분	공단 부담금	개인부담금			총계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식재료비/간식비	소계	
1등급	2,792,100				2,792,100
2등급	2,590,200				2,590,200
3등급 이하	2,446,200				2,446,20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참 고 사 항 =

1. “병”외의 보호자 연락처

성 명	관계	핸드폰

2. 퇴소시 입소비 환급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 소 동 의 서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요양등급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입소 관련 동의 내용

- ▶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상호간 성의를 다하여 협의한다.
- ▶ 입소비는 선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 ▶ 병원 진료 및 입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외박, 외출시 보호자가 동행한다.
- ▶ 입소자 본인과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지는 신체제한에 대하여 동의한다.
- ▶ 행정처리의 적절한 수행(공공기관)과 시설 내 급여제공과 관련된 문서작성 등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 ▶ 입소 중 시설 측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천재지변 등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하여 본 원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용 일체를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 ▶ 면회시간을 준수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저녁 5시까지로 한다.
- ▶ 본 원에 보관 의뢰한 물품 이외의 것에 대하여 분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 본 원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 이성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

2026년 월 일

입소자 (서명)

보호자 (서명)

노인인권 보호지침 제공 확인서

보호자(수급자)		생년월일	
----------	--	------	--

1. 노인인권 제공정보

- 노인인권 관련 정보
- 시설 생활노인 관리선언 관련 정보
- 노인학대예방, 유형 정보
- 노인학대예방 대응방법 정보
- 노인학대 예방 예측징후 정보

위 내용과 관련한 지침서를 제공 받으신걸 확인합니다.

2026년 예산 인

입소자 (서명)

보호자 (서명)

1. 수급자 및 보호자 현황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요양등급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2. 수급자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주요사고

가. 직원의 도움 없이 수급자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

- 자의적인 침대 또는 휠체어 사용 중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 자의적인 산책, 운동, 배회 중에 발생한 사고.

나. 보호자와 동반한 외박,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

다.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기타 사고.

보호자(수급자) _____은(는) 본 요양원의 입소 계약서 제19조(배상책임)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골절 및 낙상사고 등 안전 사고에 대하여 성남 천상의집1관 요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배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아 이

입소자 (서명)

보호자 (서명)

1. 고지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관명 : 성남천상의집1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3, 오성프라자 2층 연락처 : 031-709-4992
개인정보 이용 목적	요양원의 수급자 관리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건강 및 질병이력, 신체상태변화,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급자 인정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귀하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의 내용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1월 1일

입소자 (서명)

보호자 (서명)

신체제한에 관한 동의서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요양등급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상기 본인 및 보호자는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사유가 발생 시 최단시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신체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체 제한 사유

- ☐ 낙상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 피부를 긁어 대상자의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함
- ☐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제한 및 예방함
- ☐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른 요양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 불안정한 대상자의 Tube나 Catheter 등 치료적 중요 부착물을 뺄지 못하게 하여 적절한 치료를 행하기 위함

2. 신체 제한 내용

- ☐ 손/발을 제한하는 행위
- ☐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 ☐ 침대 안전바를 올리는 행위
- ☐ 휠체어 안전벨트 착용 행위
- ☐ 기타()

본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신체제한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소자 (서명)

보호자 (서명)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성남천상의집2관(1-41130-00485)
- 동의 기간: 2026. . . ~ 퇴소시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성남 천상의집 1관 대표자 귀하

연명치료 거부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아니며, 본 확인서는 응급 상황시에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요양등급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상기 보호자는 어르신의 응급상황시에 119 구급대원에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분임을 고지하여 이를 참고로 신속하게 병원 이송활동에 도움을 드리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4월 1일

입소자 (서명)

보호자 (서명)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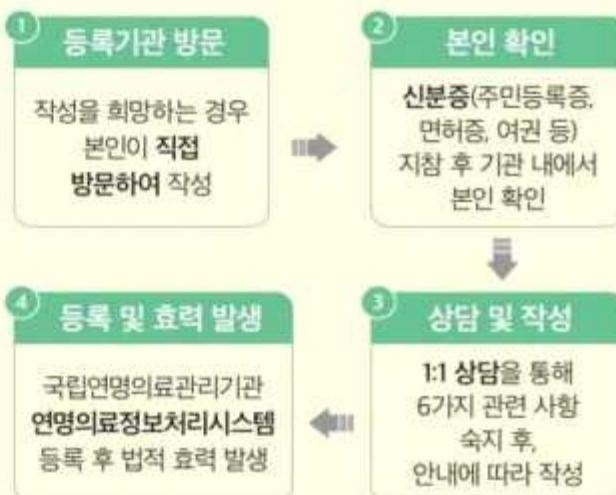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